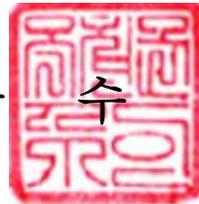


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9일

옥 천 군 수



1. 조 례 명 :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보조금의 지원 사업 정비(안 제13조)
 - 가.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신설
 - 나.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,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·재해 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

-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기준 최대 5천만 원 보조금
상향 조정, 5년 이내 동일 항목 지원 제외 삭제(안 제14조)
- 기존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 (안 제15조)

4. 개정근거 : 『공동주택관리법』, 『주택법』

5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19년 8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 :
도시교통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 : 043)730-3562, FAX : (043)731-3243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
전화번호 등

6. 붙임

-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, 다만 보궐선거는 제외한다.

10.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,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·재해 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(중전의 제7호) 후단 중 “옥상”을 “옥상 방수 또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(중전의 제9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의2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
제13조제2항11호를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 금액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제14조제2항 본문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 원”로, “수 없고 5년 이내
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”를 “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
중 “제13조제2항제5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”를 “제13조제2항제9호
및 제10호의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심사위원회의 구성)”을 “(심의위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
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를
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
“심사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심사위원회의 기능)”을 “(심의위원회의 기능)”으로 하
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
제4호 중 “심사위원회”를 각각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사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. 1. 1.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(제14조 관련)

세대수별	지원금상한액	지원비율	비고
40세대 미만	20,000천원	사업비의 85%	
40~150세대 미만	30,000천원	사업비의 70%	
150세대 이상	50,000천원	사업비의 50%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</u>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6. <u>재해우려가 있는 석축, 옹벽 유지 보수</u></p> <p>7. <u>옥상 방수 목적 4면이 폐쇄된 경사지붕(층고1.8m 이하) 설치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9. 「<u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</p>	<p>제13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3. 4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5. <u>옥상 방수 또는</u> ----- ----- --</p> <p>6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7. 「<u>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별표 2의2에 따른 <u>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</u></p>

10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11. 택배보관함 설치·보수

제14조(지원기준) 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요 비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: 최대 소요비용 전액의 범위에서 지원

2. 소요 비용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: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. 이 경우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최대 지원 보조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에 보

8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9.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, 다만 보궐선거는 제외한다.

10.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,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·재해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

<삭제>

제14조(지원기준) 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해당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 금액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② ----- 5천만원 -----

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. 다만, 제13조제2항제5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.

제15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 ②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16조(심사위원회의 기능)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3. (생략)
- ② 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1. ~ 3. (생략)
 4.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수
제1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

제15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--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
② 심의위원회

제16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① 심의위원회

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심의위원회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심의위원회

제17조(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) ①·② (생략)

③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.

1. ~ 4. (생략)

④ (생략)

제17조(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 심사위원회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 례 명 :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견